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2024. 10. 17.(목) 14:00~16:45
2. 장 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등록번호	4077
등록일자	2024.11.13.
처 리 과	기획운영담당관실

위 원 장



간 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2024. 10. 17.

사법정책자문위원회

I. 개요

- 일시: 2024. 10. 17.(목) 14:00~16:45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권오곤(위원장)
 - 김영화, 김영훈, 이경춘, 전원열, 조현욱, 차병직(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윤성식(간사), 이문렬(서기)
- 배석자
 - 이창경(주무위원)
 - 황인성(실무지원단장), 이재혁, 이지웅, 고원혁(이상 실무지원단원)
 - 김태창(재판사무국장), 진준오(인사운영심의관), 이상현(총무담당관)

II. 의사개요

1. 제4차 회의 회의록 확정

-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을 확정하였음

2.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

가. 기초발제

- 이창경 주무위원, 검토 배경, 법관 전보인사의 개편 방향 검토, 법관 전보인사의 주기 개편 및 유연화 방안 검토,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을 위한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 전문위원 제1연구반 논의 경과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음

○ 위원장

- 업무의 효율성·연속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좋은 재판을 제공함과 동시에 법관들의 생활 안정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이경춘 위원, 차병직 위원, 조현욱 위원, 김영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경춘 위원

- 우리나라 나름의 법원 조직문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미국과 지역적 환경이 다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법관 부동성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함
- 전체 틀은 유지하면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차병직 위원

- 법관인사 문제는 과거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영역임.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요구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최선책으로 보임

○ 조현욱 위원

-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것이 옳고, 법관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 한 곳에서 너무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순환근무를 해야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함. 다만, 법관들의 생활 안정 측면이나 사무분담 장기화를 고려하여 권역 내 순환근무를 축소하여 전보주기를 장기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함

○ 김영훈 위원

- 가사사건도 최근에는 전문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을 회생법원, 행정법원과 같은 군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위원장, 전원열 위원, 김영화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이창경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법관 부동성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만약 필요하다면 법관의 임용 기준을 달리하거나 지방에서 근무하는 법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외국 사례와 같이 재판을 마칠 때까지 인사이동을 보류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외국에서는 임시판사를 선임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판사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판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임. 충실한 재판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볼만 한 주제라고 생각함

○ 전원열 위원

- 법관의 전보인사 주기는 과거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명확한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주제임. 큰 전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건의문(안)의 내용 정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함. 다만, '권역별 임용'과 같이 전제 자체를 변경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회의자료 16면에서 권역별 선발로의 전면적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 '변호사가 지역적으로 충분히 분산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변호사의 8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들고 있는데, 변호사 분포와 법관의 권역별 선발 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이창경 주무위원

- 수도권에 있는 변호사의 대부분은 수도권 법원을 지원할 것이고 지방권 법원을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제에서, 지방권 법관 선발 시 충분한 임용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에 충분한 변호사가 분포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임

○ 전원열 위원

- 변호사 분포보다는 법관 지원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이므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음
- 권역별 선발과 관련하여 회의자료 18면에서 '지방권에서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법관을 선발하는 경우 전국 지방법원 재판의 균질성이 저하될 수 있음'이라는



논거가 있는데, 수도권 법원과 지방권 법원의 사건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 권역별 선발로의 전환은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므로 추진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함.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관들 간 형평성에 치중하여 큰 틀의 변화를 피하지 않고 인사 주기를 조금씩 수정하는 데 그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김영화 위원

- 법관 부동성의 원칙이 이상적이긴 하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위원 연구반에서는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이해함
- 회의자료 116면에서 사무분담기간 만료 시까지 권역 내·외의 전보인사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전원이 반대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서는 재판 진행 중 판사가 변경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내용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아 아쉬운 면이 있음. 재판 지연 방지, 사법 신뢰 회복 등의 가치를 되새길 필요가 있음
- 독일은 의대 정원의 20%를 간호사 등 관련 직역에서 7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 중에 선발하며 이들이 지역이나 필수의료 영역 등에서 활동하고 있음. 지역이나 필수의료 영역은 기피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탁월성 대신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성실성을 중시하는 것임. 사법부도 중앙과 지방의 인력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음

■ 다음과 같은 위원장, 이경춘 위원, 조현욱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이창경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회의자료 66면에 나와 있는 ‘단기휴직 등을 통하여 비선호보직을 피하려는 시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지?

○ 이창경 주무위원

- 심각한 상황은 아님. 다만, 이와 같은 시도가 소수라도 있게 되면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설명한 것임



○ 이경춘 위원

- 전원열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의 말씀처럼 법관 전보인사와 관련하여서는 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는 따로 없는지?

○ 이창경 주무위원

- 법관 전보인사의 장기화나 권역별 선발제도 등에 관해서 다룬 정책연구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경춘 위원

- 심급제도 운영에 따라 판례의 통일, 재판의 균질화와 같은 가치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으므로 종래 지역법관제도와 같은 제도개선을 논의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함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대대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연구결과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함

○ 위원장

- 해외 사례 중 인사이동을 시행하는 국가의 수, 인사이동 주기 등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는지?

○ 이창경 주무위원

- 상세하게 파악된 내용은 따로 없음. 다만, 전국단위의 순환 근무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에서만 시행 중이며, 그 중에서도 한국의 인사 주기가 훨씬 잦은 편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음

○ 조현욱 위원

- 권역별 선발은 결국 지역법관제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함. 공직사회는 지방 순환 근무를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 선발방식 보다는 순환주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함

○ 위원장

- 지역법관제도를 보완해서 발전시킬 여지도 있었는데 너무 일찍 포기를 했다는 생각도 들었음

○ 이창경 주무위원



- 지역법관제도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음.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고 나서 지방 특정 권역 계속근무 법관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음. 물론 권리와 의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이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할 경우 인사희망을 수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다. 건의문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1] 지향점

- 재판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법관이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법관의 독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관의 전보인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향후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법조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후 임용된 법관에게 적합한 인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개선방안

- 법관의 원칙적 사무분담기간이 장기화된 점을 고려하여 심리와 판결의 주체가 가급적 일치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관의 전보인사는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행 후 임용된 법관에 대해서 생애 주기와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보인사의 기준, 주기 등 순환근무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적정한 권역별 근무기간을 확보하고 재판의 연속성과 법관 사이의 형평을 제고함이 바람직함

※ 15:20경 정회

※ 15:40경 속회



3.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가. 기초발제

- 김태창 재판사무국장, 법원 9급 공채 선발방식 연혁, 전국기반 지역구분 병행모집 선발방식, 종전 지역구분모집의 문제점과 제도 변경시 재발 가능성 여부, 현행 전국모집제도 현황 및 문제점과 제도변경의 필요성, 제도변경방안 및 대안제시, 법원 조직 및 사법서비스에 미칠 영향 분석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김영훈 위원, 조현욱 위원, 차병직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김태창 재판사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음
 - 김영훈 위원
 - 지역구분 병행모집 방식에 대해서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함
 - 조현욱 위원
 - 전국모집과 지역구분을 병행하는 아이디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함
 - 차병직 위원
 - 전국기반 지역구분 병행모집 선발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음.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점수 편차 외에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 김태창 재판사무국장
 - 지역의 인재풀이 과거와 달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전국모집과 지역구분모집의 선발 비율을 조정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한편 5년 정도의 전보제한기간을 설정하면, 지방지역의 대규모 수도권 진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위원장, 이경춘 위원, 김영화 위원, 전원열 위원의 질의 및 이에 대한 김태창 재판사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회의자료 57면에 기술된 승진 문제와 관련하여, 승진은 전국 단위가 아니라 법원별로 하는 것인지?



○ 김태창 재판사무국장

- 승진은 법원별로 이루어지고 있음. 2026년에 전국기반 지역구분 병행모집 방식을 시행하게 되면, 수도권 전입에 필요한 기간이 기존 3~4년에서 2~3년으로 단축되어 시행 초기에 한해 일시적으로 수도권 내 서기 승진이 지체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공평해질 것이라고 생각함

○ 이경춘 위원

- 회의자료에서 1대1 교류원칙 확립이 강조되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제도 시행을 위해 강조한 것인지?

○ 김태창 재판사무국장

- 지역구분모집은 1대1 교류가 원칙이고, 전국모집은 순환근무가 원칙적인 모습임. 그러나 종전 지역구분모집 방식에서의 1대1 교류원칙이 2011년 전국모집 전환 시에도 그대로 시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주사보, 사무관 직급의 순환 없이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만 지역발령을 내는 현상이 나타났음
-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의 전보제한기간을 설정할 경우 임용 후 5년이 경과하더라도 발령 희망지에 같은 직급의 교류 희망자가 있어야 인사이동이 가능하므로, 지역구분 합격자는 사실상 그 지역에 계속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임

○ 이경춘 위원

- 종전 지역구분모집 방식에서의 1대1 교류원칙이 전국기반 지역구분 병행모집 방식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 김태창 재판사무국장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음

○ 이경춘 위원

- 서기보에서 서기로 승진하는 방식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 김태창 재판사무국장

- 5년 6개월이 경과하면 모두 근속승진이 되고, 그 전에 결원이 발생하면 일반승진이 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경춘 위원



- 합격 편차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편차 허용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를 벗어나면 지역구분 선발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탈락시키고, 전국모집 선발 정원으로 보완하는 방식의 운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함
- 김태창 재판사무국장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반에서 논의가 있었고, 관련 자료를 인사 담당실에 전달하였음. 운영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 김영화 위원
 - 제도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함. 지역별 편차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나 경찰청의 선례에서도 형평성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이 설득력을 높여주었고,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사법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함
 - 지역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5급 이상이 되면 전국 순환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 김태창 재판사무국장
 - 5급의 경우 심사승진을 통해서 선발하는데, 지역별 안분 방식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우수 직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결과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전국 순환근무가 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음
- 윤성식 간사
 - 참고로 말씀드리면, 6급에서 5급 승진 시 기존에는 사무관 시험제도가 운영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시험제도가 폐지되고 근무성적 등을 토대로 하는 심사 승진제도가 새롭게 시행될 예정임
- 전원열 위원
 - 회의자료 45면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춘천의 선발 인원이 결원대로 25명이 아니라 20명, 23명, 19명 등으로 다른 이유가 합격선 편차가 많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출 직원의 수, 전년도 합격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만든다는 취지인지?
- 김태창 재판사무국장



- 맞음.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실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음
- 위원장
 - 회의자료 61면을 보면 신규 임용자의 수도권 근무희망자가 73.5%임에도 서울 발령비율은 4%에 불과한데, 병행모집방식으로 변경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
- 김태창 재판사무국장
 -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함. 병행모집방식으로 선발할 경우 전국모집방식으로 선발된 인원은 대부분 서울 발령을 받고, 지역구분모집에서 미충원 된 인원만 지방으로 발령받게 될 것임

다. 건의문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① 지향점
 - 현행 전국 모집 방식의 법원공무원 9급 신규 임용제도는, 수도권 근무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현상과 결부되어, 지방 소재 법원에 배치되는 신규 임용자들의 새로운 환경에의 부적응, 교통 및 생활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근무 의욕 저하, 단기간 지역 근무 후 수도권 전출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는 지방 소재 법원의 업무 공백, 지역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법원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수도권과 지방 소재 법원에 경력별로 균형잡힌 인적 구성을 갖추며, 나아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법원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② 개선방안
 - 지방권 소재 법원에 장기간 근속할 법원공무원을 확보하여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비연고지 근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종전 지역구분모집 당시 나타난 합격선 및 임용시기편차 등의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전국모집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구분모집 방식을 일정 부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고, 지역구분모집을 통한 신규임용자의 적정한 전보기간 제한, 1대1 전보원칙의 확립 등 과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음

4. 제6차 회의 안건 설명

가.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

- ▣ 정재우 형사지원심의관, 논의의 필요성, 주요 쟁점,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 등을 보고함

나.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 ▣ 김용현 민사지원제1심의관, 논의의 필요성, 주요 쟁점,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 등을 보고함

5. 제7차 회의 안건 선정

- ▣ 위원장, 제7차 회의 안건으로 ‘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을 선정함

6.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5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할 부분이 없다고 결정함

7.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료 외부 공개 여부

-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5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1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공개
2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	일부 비공개
3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공개



4	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자료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	공개
5	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자료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공개

III. 다음 회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

- 일시: 2024. 11. 13.(수) 14:0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끝).